

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강동 제4선거구, 더불어민주당 황인구 의원입니다.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
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
‘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조성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
전입금을 의미하므로 동 기금의 조성재원을
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
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